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정 이유

- 가. 인천광역시 시책의 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학술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 나. 학술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 나.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계획·과업내용·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5조)

- 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과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용역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정함(안 제7조, 제8조)
- 마. 위원회에서 심의 할 의안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학술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소관업무 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2. 외부위원 :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12명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내부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과업내용·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용역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전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에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연구·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심의대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용역사업을 설명하게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해야 하며, 용역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간사에게 제출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학술용역(용역) 심의위원회(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 현황

시·도 별	조 례 명	규 정 명(지침)	제정일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 7.30	조직담당관실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회 조례		2008. 5. 7	계약기술심사 담당관실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 3. 5	정책기획관실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	2003. 4. 7	평가담당관실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역업무 관리 지침	2000.12. 1	정책기획관실
대전광역시		용역사업 및 사업용장비 구입 등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	1996. 7.26	정책기획관실
울산광역시		용역사업 사전심의 규정	1997. 7.15	예산담당관실
경 기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 1. 7	비전기획관실
강 원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 4. 4	예산담당관실
충 청 북 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08. 6.13	정책기획관실
충 청 남 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2000.10.20	혁신정책기획관실
전 라 북 도	용역과제심의의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0. 7.14	예 산 과
전 라 남 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2002. 3.27	정책기획관실
경 상 북 도		학술용역 사전심의 규정	2000. 1.20	정책기획관실
경 상 남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11.13	정책기획관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2007. 1.30	예산담당관실

<첨 부>

실·국(군·구)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기관별	제출의견	검토내용